2012 년 7월 9일 이후 전출•전입을 예정중인 외국인 주민께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이세이 21 년 법률 제 77 호)가 시행됨에 따라, 2012 년 7 월 9 일 (시행일) 부터 외국인 주민 (주) 도 주민기본대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에게도 주소지의 시구정촌에서「주민표」가 작성됩니다.

또한, 주민기본대장제도에서는 외국인주민도 다른 행정지역으로 이사하실때는 현 주소지의 시구정촌에 전출 신고를 하고 새로 거주할 지역의 시구정촌에 전입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지니고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중장기간 체류자」 (체류카드 대상자. 체류자격이 「단기체재」이거나 체류기간이 「3 개월」이하인 분 등은 포함되지 않음) 인 분이나「특별영주자」인 분 등이며 시구정촌 의 구역내에 주소를 소유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의사항》

- ○전출 신고를 하시면 시구정촌에서 「전출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새로운 시구정촌 의 행정구역으로 전입하실 때, 주소가 정해진 날로 부터 14 일 이내에 「전출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서 전입 신고를 합니다.
- ○동일한 시구정촌 행정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실 때는 살고 계시는 지역의 시구정촌에 전거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을 출국하여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살고 계시는 주소지 시구정촌에서의 전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전출 신고나 전거 신고를 하실 때는 체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중 하나를 가지고 오십시오.
- ※전입 신고 혹은 전거 신고 시,외국인 주민의 분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에 외국인 주민이 새롭게 속하게 되는 경우등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의 분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예를 들면, 일본의 시구정촌에서 발행된 혼인 신고등에 관한 수리 증명서등)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세요.

주민기본대장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 주민표를 편성한 것으로 주민분들에 관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표 사본의 교부 등으로 주민분들의 거주관계를 공증함과 아울러 주민분들에 관한 다양한 사무를 위하여 이용됩니다.

※주민기본대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문 <u>「외국인 주민의 주민기본대장제도가</u> 시작됩니다」를 보십시오.